

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3월 10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1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5. 3. 18) 상정
- 제11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5. 3. 18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최 인 용)

가. 제안이유

-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비용의 일부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고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문화 예술진흥법이 개정(2000.10.23. 대통령령 제16990호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고, 건축주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.(안 제3조)
-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1,000분의 2이상에서 1,000분의 2로 함.(안 제6조제1항제2호)

- 미술장식 설치에 대하여 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연속 부결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을 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미 설치시에는 시장이 공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조의2신설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 검토는 이루어진 사항인지?	○ 수원, 성남과 부산시 등의 관련 조례 등을 사전 비교 하였음.
○ 건축주가 미술장식품 설치를 지연이나 거부할시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할 것인가?	○ 시장이 직접 공모하는 방법으로 설치를 할 예정임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49호
의결 년월일	2005.3.24 (제118회)

제출년월일 : 2005. 3.1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비용의 일부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고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(2000.10.23. 대통령령 제16990호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고, 건축주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.(안제3조)
- 나.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1,000분의 2이상에서 1,000분의 2로 함.(안제6조제1항제2호)
- 다. 미술장식 설치에 대하여 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연속 부결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을 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미 설치시에는 시장이 공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.(안제6조의2신설)

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”를 “부천시 문화예술
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“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제3조제2항중 “건축공사 착공계”를 “건축공사착공신고서”로, “제출하
여야 한다”를 “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
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” 로 하고, 동조에 제3항을 다음
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
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중 “1,000분의 2이상”을 “1,000분의 2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의 예치금) ①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장식 설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
장에게 예치할 수 있다.

1. 위원회 심의에서 3회 이상 연속 부결된 경우
2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건축주가 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을 예치할 경우 제4조의 규정에
의한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확인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
에 할 수 있다.

③건축주는 예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장
식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.

④시장은 건축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지
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술장식설치 예치금액으로 미술장식을 공모할
수 있다.

⑤시장은 공모된 미술장식을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.

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.

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 다만, 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.

제1조중 “문화예술진흥법”을 “「문화예술진흥법」”으로 하고, 제6조제2항 본문중 “수도권정비계획법”을 “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”으로 하며, 제14조중 “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</p> <p>제2조(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)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,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<u>다음 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미술장식의 설치) ①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<u>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</u>에 시장에게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<u>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6조(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)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</p>	<p>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</p> <p>제2조(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건축물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 -----.</p> <p>제3조(미술장식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<u>건축공사 착공신고서</u>----- ----- -----<u>제출하여야 하며,</u> <u>시장은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<u>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6조(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) ①----- -----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음 각호와 같이 하되,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공동주택(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<u>1,000분의 2이상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1,000분의 2</p> <p><u>제6조의2(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의 예치금) ①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장식 설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 예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위원회 심의에서 3회이상 연속 부결된 경우</u></p> <p><u>2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 <p><u>②건축주가 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을 예치할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미술장식설치확인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건축주는 예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장식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시장은 건축주가 제3항의 규정</u></p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<u>에 의한 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술장식설치 예치금액으로 미술장식을 공모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시장은 공모된 미술장식을 건축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.</u></p> <p>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삭 제〉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위원회의 기능) ①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